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20 선고 2022가단402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하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세

변 론 종 결 2022. 11. 25.

판 결 선 고 2023. 1. 20.

주 문

1.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
가. 원고들에게 각 6,66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0. 20.부터 2023. 1. 20.까지는 연 5%의,
그 다음 날부터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07. 4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
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의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,66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. 10. 1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,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07. 4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원고들에게 각 6,666,6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2. 10. 19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. 10. 20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. 1. 20.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②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07. 4. 1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신민석

별지